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공동 NGO 보고서 제출

대한민국

제86차 실무그룹 사전 세션

(2023년 2월 27일 ~ 3월 3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총 19개단체)

코디네이터 단체 연락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kwau@women21.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admin@minbyun.or.kr

목 차

머리말.....	1
법·제도 추진체계.....	1
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2. 협약 16.1(g)항(부성주의 원칙 폐기)의 유보 철회.....	2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2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3
공적참여.....	4
5. 공공부문 참여.....	4
여성폭력.....	4
6.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5
7. 사이버 공간 성착취 산업과 피해지원 체계.....	5
8. 형법 297조의 개정 및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6
9. 성폭력 피해자 권리.....	6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7
11.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근절.....	7
12.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8
13. 성착취와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8
14. 인신매매 및 성매매.....	9
15.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10
16. 미군위안부 문제.....	11
17. 장애여성 인권.....	11
대표성.....	12
18. 여성 정치 대표성.....	12
평화.....	12

19.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	12
이주	13
20. 결혼이주여성 인권	13
교육	14
21. 포괄적 성교육	14
노동	14
22. 성별임금격차.....	14
23. 일생활 균형.....	15
건강	16
24.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16
25. 트랜스젠더 여성, 인터섹스를 비롯한 LGBTI의 건강권.....	16
결혼과 가족관계	17
26.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17
27. 사법부 구성원의 젠더 폭력 요소 이해	17
28.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	18
29.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19

머리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2)’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9로 146개국 중 99위에 머물렀다.¹ 2023년 1월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2%로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지난 1996년부터 2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다양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권 가치를 수호하며 존중한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해오고 있으나,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한국 사회 내 고조되고 있는 페미니스트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하며,²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2022년 10월 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하였다. 현 정부는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면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여성들의 투쟁으로 일정부분 진전해온 여성인권 관련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후퇴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³

법·제도 추진체계

1. 포괄적 차별금지법

2007년 첫 입법 시도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4개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와 함께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도 1국회에 제출됐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두 활동가가 46일 동안

¹ The RoK ranked 115th out of 146 countries on the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subindex; 97th on the educational attainment; 52nd on the health and survival; and 72nd on the political empowerment.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2.pdf

² Time, “How South Korea’s Yoon Suk-yeol Capitalized on Anti-Feminist Backlash to Win the Presidency”, May 10, 2022, https://time.com/6156537/south-korea-president-yoon-suk-yeol-sexism/?fbclid=IwAR346wZK3II4IQuj1S-zF4v4lMEGG5AmiUZI_EmjBUOo8l-EdYwKi0ydzBs

The Guardian, “‘Devastated’: gender equality hopes on hold as ‘anti-feminist’ voted South Korea’s president”, March 11,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r/11/south-korea-gender-equality-anti-feminist-president-yoon-suk-yeol>

³ 116 global CSOs, Joint Statement to South Korean president-elect Yoon Seok-youl on Women’s Rights, April 3, 2022, <https://www.hrw.org/news/2022/04/04/joint-statement-south-korean-president-elect-yoon-seok-youl-womens-rights>

단식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22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공청회를 연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질문제안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에 대해 제시하라.

2. 협약 16.1(g)항(부성주의 원칙 폐기)의 유보 철회

정부는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⁴ 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부성주의 원칙 폐기와 민법 781조 제1항 개정 과제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0) 및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0) 등으로 포함한 점을 국가보고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부성주의원칙 폐기 절차 마련을 위해 『민법』 781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하여 현재 논의 중이라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⁵에 따르면 개정안 추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추진에 나서겠다 했고, 국정감사 시 진행된 부성주의원칙 폐기에 관한 서면질의에서 역시 부성주의 폐지가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전하여⁶ 현재 관련 법개정 작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질문제안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부 공식 정책과제 문건에 부성주의 원칙 폐기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해당 계획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부성주의 원칙 폐기를 위해 관련 부처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라. 특히 『민법』 제781조 1항 개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어떠한가.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01년 신설되어 부처 형태로 20여 년째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라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는 ‘전담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예산과 인력을 비롯하여 모든 부처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권한을 갖기 위한 전담부처 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부처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며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정했고⁷, 2022년 10월, 정부 여당의 당론 성격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이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이자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이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⁴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2020)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⁵ 한겨레, "아빠 성 따르는 '부성주의' 폐지한다더니...1년 만에 뒤집혔다", 2022.05.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2235.html>

⁶ 2022 법무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박주민 의원실 제공)

⁷ 116 global CSOs, Joint Statement to South Korean president-elect Yoon Seok-youl on Women's Rights, April 3, 2022.

<https://www.hrw.org/news/2022/04/04/joint-statement-south-korean-president-elect-yoon-seok-youl-womens-rights>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하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될 것이다.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성평등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⁸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따라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제안

- 한국 정부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인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무와 계획을 밝혀라. 또한 이러한 책무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 중앙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움직임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성평등 추진체계가 축소되거나 명칭에서 ‘여성’이 삭제되는 등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중앙정부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지방정부 추진체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GIA) : 한국 정부보고서에는 ‘2019년도에 정부업무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표면화된 2022년도에는 다시 제외되어, GIA의 성과 및 결과의 활용에 관련한 의사결정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6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잦은 이직은 원활한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과 예산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⁹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우려스럽다.

질문제안

-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들은 유지·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인력과 재정 강화 방안 및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에서의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증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System) : 한국의 성인지예결산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설

⁸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성평등 정책 담당부서명이 ‘여성청소년가족과->인구가족과’ ‘복지여성국->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로 바뀌었다 한겨레, “‘여가부’ 폐지 공언 1년, 여성은 사라지고 인구·가족만 남았다”, 2023.01.06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180.html

⁹ 성별영향평가법 (17 조)

https://elaw.klri.re.kr/eng_mobile/ganadaDetail.do?hseq=33723&type=abc&key=GENDER%20IMPACT%20ANALYSIS%20AND%20ASSESSMENT%20ACT¶m=G

명자료 또는 평가자료를 취합한 보고서류로, 종합평가 또는 메타분석이 없고,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절차가 없다. 즉, 재원배분구조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또한, 예산과정의 성주류화 전략 속에 시민참여 촉진 장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GRB 제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규모만 발표하다 보니, 국내 언론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인지예산규모를 ‘여성을 위한’ 예산 규모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래에는,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조례 제정을 방해하려는 반페미니즘 집단의 점거나 집단문자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질문제안

- 성인지예산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종합평가, 메타분석 기능을 마련하고 정부업무평가체계에 성인지예결산서의 종합평가 내용을 반영할 구체적 계획과, 성인지예산제도 내 시민(여성)의 참여와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라.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라.

공적참여

5. 공공부문 참여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2017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여성 비율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가급~나급)의 10%, 중앙행정기관 본부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24.4%, 공공기관 임원의 22.5%, 지방공기업 관리자의 11.8%, 국립대학교 교수의 18.9%, 경찰의 14.2%, 육군·해군·공군 등 군인 간부의 8.2%에 지나지 않는다. 위촉직 여성 비율을 40%로 의무화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구성을 제외하고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부 4처 18청으로 이루어진 중앙 부처에서 여성 장관·처장·청장은 6명(15%)이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2명 중 여성 4명(7.7%)에 불과하다.

질문제안

- 한국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매우 낮은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또한 중앙 부처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정부 고위직 인선에 있어 여성 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여성폭력

6.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한국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유지와 회복’의 문제로 다루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서도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유지되었으며, ‘가해자 상담’이 임시조치에 추가되었다. ‘가정유지와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운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에는 언급조차 없다. 한편, 2020년 가정폭력 신고 221,824건 중 검거 인원은 20%에 불과하며, 약 35%는 형사사건 대신 상담·교육을 주요 처분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¹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구속기소된 가해자는 0.5%에 불과했다. 국가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무력화하는 대안적인 절차를 폐지하고 법률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문제안

-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라.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율 및 구속률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가정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보를 제공하라.

7. 사이버 공간 성착취 산업과 피해지원 체계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해 여전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성착취 영상을 유통시키며 성폭력 산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디지털성폭력이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거나 우회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우회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중 10개소에서 ‘디지털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전국적 피해지원 체계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아 마치 각개 전투하듯 지원체계가 구성되었다. 각 사업별 지원의 범위, 내용, 사례관리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이가 있으며, 기능이 중복되어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기존의 성폭력과 분절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질문제안

- 성착취 산업을 운영한 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변모하는 디지털성폭력 산업화 양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라.
- 현재 각 지원 현장에 분절되어 종합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고충이 있는 바, 기존의 성폭력 지원 체계와 분절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피해지원

¹⁰ 2021 검찰청 및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8. 형법 297조의 개정 및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도 위계, 지위 등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한국사회에 보여주었다. 실제로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3월 접수한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 1,030건 중 71.4%(735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사례이다.¹¹ 그러나 한국정부는 여성단체의 오랜 요구와 위원회의 두 차례의 권고(CEDAW/C/KOR/CO/7, 21과 CEDAW/C/KOR/CO/8, 23)에도 본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배우자 강간과 같은 동의 여부에 기반한 강간의 처벌 공백을 만들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보복성 역고소 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장기간 계류되거나 끝내 폐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10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3 건의 관련 법안이 1년 이상 계류되어 있다.¹² 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당일 관련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¹³ 여성인권단체와 시민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질문제안

- CEDAW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 국가는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양형 기준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라.

9. 성폭력 피해자 권리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의 분석 결과 2017-18년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 되고(84.1%), 기소된 사건 중 무죄선고는 15.5%,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 6.4%에 그쳤다.¹⁴ 이는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뿐 아니라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도 증가하고 있어 역고소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재검정, 신체감정촉탁을 하고¹⁵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 이력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며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은 길어지고 피해자는 위축된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다

¹¹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 2 차 의견서 및 카드뉴스(2019.7.9)]직접적인 ‘폭행협박’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2019.07.09.

¹² 경향신문,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비동의 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 중, 2021.08.11.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lawrevision/

¹³ The Korea Herald, “Ministry blasted over rape law U-turn”, Jan.26,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127000672>

¹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117 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보도자료,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¹⁵ 한겨레, “특하면 성범죄 피해자 진료·신체감정 요청...이대로 괜찮나요?”, 2022.01.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7727.html>

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사실조회 촉탁,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언론 제공/SNS 공개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드러나고 있다.¹⁶

질문제안

- 성폭력 피해자 보복성 역고소 관련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제시하라.
-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의료기록, 성이력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제공하라.
- 무분별한 사실조회 촉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022년 9월,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 동료의 스토킹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용자 책임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체 여성노동자의 36.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¹⁷ 작은 규모 사업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피·가해자 공간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배포로 대체가 가능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한계로 작용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가 성희롱 인식 및 신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는 해당 예외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예방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질문제안

- 성희롱 예방교육 예외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 정책 제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라.

11.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근절

2022년 7월 ‘경찰에 의한 성매매여성 불법촬영’ 사건과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¹⁸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의 2020년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율

¹⁶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2021),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키 시리즈 집담회 1차

¹⁷ 장진희(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5 인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포럼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여성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¹⁸ The Korea Times, “Public outraged by yet another stalking murder”, Sep.15,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1/113_336180.html

이 각각 77.25%¹⁹, 100%²⁰였다는 점에서, 이수율을 중심으로 교육의 효과를 판단하는 현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군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조치에 여군은 17%, 남군 54.7%가 신뢰한다고 답변했다.²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보니 피해자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며, 이는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묵인하는 원인이 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군 32.1%, 남군 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여군 2.2%, 남군 0.3%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질문제안

- 국가는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령, 직급 등의 차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국가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보고 활성화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성희롱 사건의 공식 처리 현황을 밝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12.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여성가족부 ‘2017년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의 상당수가 남한에 입국하기 전, 북한에서 18.7%, 중국과 제3국에서 26.7%가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 입국해서도 25.2%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가정폭력의 피해 또한 30대가 42.3%, 40대 30.8%, 50대 15.4%, 20대 7.7%에 달한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노출되었던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위탁 심리치유센터는 전국에 10곳뿐이며,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시기적절한 지원이 어렵다.

질문제안

- 탈북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발생 당시 초기 개입과 여성폭력피해 전문상담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및 심리치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

13. 성착취와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2020년에 E-6 비자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체류 연장 신청을 이주여성들이 직접 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국어가 아니라

¹⁹ 한국안전방송,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경찰, 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2022.09.23.

<http://www.csbn.co.kr/mobile/article.html?no=238127>

²⁰ 여성가족부 누리집, 공표공개자료,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실적

²¹ 대한민국 국방부, 2019, 군 성폭력 실태조사

²² 조선일보, “여군 32%가 성희롱 피해 경험… 남성의 4 배”, 2022.05.0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9/MEVWC5HTEJDFZPE6LK3CVFZ554/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표에 따라 피해자로 인지되어도 관할 지원단체에 연락처를 전달할 뿐 어떤 보호 장치 없이 같이 왔던 업소 관계자들과 같이 귀가하게 하며, 지원단체 연락처 또한 유효하지 않은 번호인 경우가 많다. 출입국 사무소가 이 식별지표를 보고 성착취 업소·기획사 등을 신고하거나 피해가 인지된 여성들을 관할 지원 단체에 연계한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E-6-2비자 소지자의 클럽 내 성착취 강요 등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4개 부처가 함께 외국인전용음식점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소가 불법적인 요소를 은폐하고 여성들에게 거짓 답변을 주입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미등록체류 이주여성은 국내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성매매/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당국에 적발되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제대로 된 ‘식별과정’없이 피해 조사도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되고 있다. G-1-11비자의 경우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소송, 수사, 재판 등) 과정 등의 진행에서만 허가가 될 뿐 쉼터 입소, 의료, 치료회복 등 지원에 있어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질문제안

- 출입국은 인신매매식별지표에 따라 성착취 업소·기획사 등을 신고 한 건수, 관할 지원 단체에 연계한 건수가 거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경찰과 출입국의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또한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자인 관광비자, 유학비자 소지, 미등록 이주여성들에게 보호와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합동점검이 경찰의 인지수사로 연결된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합동점검과 단속 방식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방식의 업소 모니터링과 수사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라.
- 법적 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G-1-11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라.

14. 인신매매 및 성매매

한국 정부는 2013년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고 2021년 4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의 인신매매 규정은 유엔 인신매매의정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죄 처벌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범죄자 처벌 노력은 미비하다. 이에 미국무부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 국가로 강등시켰다. 인신매매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기관 지정, 기본계획 마련 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내, 지방정부 간, 국제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함에도 범정부적 노력은 미흡하며, 각 부처에서도 인신매매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피해자도 이 체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여성은 처벌되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피해자도 처벌되거나 강제 추방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피해자가 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탈성매매를 어렵게 한다.

질문제안

- 인신매매방지법 또는 형법에 유엔 정의에 부합하게 인신매매 정의를 수정하고, 처벌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 인신매매방지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 방지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 피해자 조기발견,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의 권리보호강화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구체적 내용과 계획은 어떠한가?
-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여 인신매매 방지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가? 없다면 피해자 처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5.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2022년 11월 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CCPR)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2014년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재차 요구했다.²³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박진 외교부장관은 진실과 정의에 반하고,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2015년 한일합의’가 두 정부간 공식 합의로써 존중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²⁴

이 가운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와 피해사실 부정,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 폭언과 모욕때문에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다시금 상처를 입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²⁵ 성희롱과 여성혐오적 언동으로 현장 참가자들과 활동가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²⁶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1월 긴급구제결정으로 극우세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하였으나 한국 정부와 경찰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질문제안

- 한국 정부의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라는 입장은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인가?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
-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처벌을 위한 여성가족부 산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라.

²³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Japan, 30 November 2022, CCPR/C/JPN/CO/7, para.29

²⁴ The Korea Herald, “Yoon makes economic diplomacy a top priority”, July 21, 20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721000922>

²⁵ 한겨레, “보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극우에 의해 방해받는 “위안부”시위”, 2022.1.20.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28191.html

²⁶ <https://www.youtube.com/watch?v=bHhWCJk8z0>

16. 미군위안부 문제

최근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122명의 미군위안부 원고가 2014년 6월 25일에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²⁷ 이는 분단 이후 70년 이상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기지촌에서 미군위안부에게 행한 각종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인 판결로써 그동안 당한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드러낸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토의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는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도 행정부는 상위법 부재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질문제안

-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에게 공식사과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라.
-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에 여전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 외에 미군위안부 문제를 추가할 계획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17. 장애여성 인권

2021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9,200명, 가정폭력 피해자는 267명으로 전체 폭력피해 여성의 12,147명의 77.9%에 해당한다. 폭력의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63.8%, 강제추행 29.3%,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5.8% 기타유형 1.1%로 조사되었다.²⁸

폭력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13.2%, 정신적 장애 83.5%, 중복장애 3.3%로 조사되어²⁹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장애여성 폭력 피해가 만연함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 실태 파악을 위한 통합적·전문적인 국가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폭력 피해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로 중장기쉼터(보호시설)가 필요하지만 전국에 단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3곳(부산, 충북, 경남), 체험 홈이 1곳(전남)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장애여성이 장애를 이유로 지원기관을 찾지 못해 결국 폭력이 발생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인 입소가 가능한 노숙인 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

²⁷ The Hankyoreh, After 40 years in US camptown sex trade, S. Korean woman rejoices in court victory, Sep.30,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60900.html

²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내부 통계

²⁹ 각주 24번과 동일

질문제안

- 한국 정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통합적·전문적 통계 구축 계획을 밝혀라.
- 한국 정부는 장애여성 폭력피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센터 확충 방안과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 계획을 밝혀라.

대표성

18. 여성 정치 대표성

여성 국회의원 수는 2022년 12월 기준 299명 중 57명(19.1%)이며, 190개국 중 126위이다(IPU 2022). 전체 의석 300석 중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며 이 중 여성 비례대표는 27명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홀수 순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후보의 50%를 여성에 할당하고 있으나 지역구 여성후보 30% 비율은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여성 기초단체장 7명(3%), 여성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115명(14.8%), 여성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650명(25%), 광역 비례의원 58명(62.4%), 기초 비례의원 348명(90.2%)이다. 지역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에 1명 이상 여성 추천하게 하여 여성이 광역보다는 기초에 공천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0% 수준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도록 장려하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한 모든 정당들에게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2022년 4월 15일)하여 여성후보 공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보조금을 거대 정당이 독식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2022년 5월 12일) 아직 개정된 것은 없다.

질문제안

- 한국 정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법안 개정(지역구 성별할당제 30% 의무화 등)에 적극 나설 수도 있음에도 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평화

19.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

2022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으로 군사적 긴

장이 고조되었다.³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증가, 나아가 미-중 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분쟁과 재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그 결과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기반 약화로 인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 기간 각 부처의 이행 점검은 서면으로만 실시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은 1325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의 다양한 이행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ME) 시스템 부재로 인해, 1325 국가행동계획의 근본적 목표인 여성의 인간 안보를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질문제안

- 유엔안보리 1325 결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양성평등기본법 41조 3항개정) 마련과 효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에 대해 설명하라.

이주

20. 결혼이주여성 인권

결혼이주민은 결혼이민 비자(F6)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여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귀화를 신청한 후 귀화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2022년 12월 현재 21개월이다.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소화되는 경우는 10개월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다. 절차적으로 결혼 이주민은 필요기간 2년, 심사 기간 약 2년을 고려하면 최소 4년 동안 체류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된다. 특히 결혼이주민은 배우자의 조력없이 안정적으로 체류, 귀화하기 어렵다. 신원보증서가 제출하는 서류로서 사라졌을 뿐,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 대한 별도의 절차로 귀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귀화 불허율도 높다. 혼인 간이귀화 불허자는 2019년 3,121명, 2020년 3,158명, 2021년 2,789명이다. 같은 기간 귀화 신청자는 2019년 9,881명, 2020년 9,617명, 2021년 10,489명이다. 이미 한국에 기반을 갖추고 가족과 생활을 꾸리고 있는 결혼이주민들의 귀화 불허율이 높아서 체류 불안정성이 오히려 가족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질문제안

- 이혼, 사별 등 결혼 상태에 따른 체류와 귀화 절차가 다른 것은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³⁰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SLBM, ICBM 등 80 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 당국은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였고,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훈련도 동해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 참고기사 : CNN, “North Korea fired the highest number of short-range missiles in a day, says South Korea”, November 2, 2022, <https://edition.cnn.com/2022/11/01/asia/north-korea-missiles-wednesday-intl-hnk/index.html>

- 결혼이주민은 혼인귀화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강화된다. 귀화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이미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결혼비자 강화 정책 이전 입국자 등이 안정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교육

21. 포괄적 성교육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영역을 생식·보건의 문제로만 다루어 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체계에서 여성의 몸은 인구 조절의 도구로 대상화되어 왔으며, 성적·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결혼한 남녀의 모성 보건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해석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 중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였고,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사노조, 학부모단체, 여성인권시민사회 등 각계의 비판과 수정 촉구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2일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영 없이 인권과 교육에서 후퇴한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2014년의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Beyond), CEDAW 등 보편적 인권기준과 젠더 관련 원칙에 부합하면서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적 다양성 등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질문제안

- 2022년 교육부가 도입한 교육과정개정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목적과 내용, 성별 고정관념 및 성적 다양성 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포함).
- 정부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문제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계획인지 밝혀라

노동

22.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 : 2021년 기준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52.3%³¹에 육박한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³¹ 김유선, 202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으나 2021년 52.3%로 전년대비 1.9%p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평균임금의 37.8%에 불과하다. 2021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45만원으로 같은 해 월 최저임금인 191만원보다 46만원이나 낮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016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26.4%이고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71.2%이다.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 중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주요 노동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극단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금공시제 : AA(affirmative action)제도는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고용형태에 대한 구분, 절대적 비교기준 등이 없고 보고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AA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권고 받은 임금공시제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채용성차별 : 2018년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조직적 면접점수 조작으로 여성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노동계는 터무니없이 미약한 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 강화와 지원자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와 통계적 차별판단기준의 도입을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면접 과정에서 여성들은 결혼, 남자친구, 출산에 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

질문제안

- 여성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가?
- 초단시간 노동자가 놓여 있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고 있는가?
- 임금공시제는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강제적 공시와 드러난 격차를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제도를 마련하겠는가?
-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포함된 제도개선과 환경,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라.

23.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 여성 : 2021년 혼인건수³²는 전년 대비 9.8% 감소하였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각각 역대 최저이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들이 결혼과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정책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이는 경력단절 상태에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예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의 선회를 뜻한다. 변화된 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³²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혼인·이혼신고서 접수 기준)

남성 육아휴직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장 규모와 부문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6.3%이며 56.7%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 육아휴직 양극화를 해소할 정부의 정책은 없다.

질문제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의한 정책개발을 왜 하지 않고 있는가?
-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편중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 수 있는 정책, 남성 육아휴직 양극화를 해소할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건강

24.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2021년 1월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대체입법 마련은 물론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건당국이 빠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유산유도제 도입 역시 WHO가 필수약품으로 지정하고 여러 국가에서 안전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 요구로 시간끌기를 하다가³³ “제약사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전반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추진체계마련,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한 도입 및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체계 마련, 임신중지 전후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해왔다.

질문제안

- 안전한 임신중지 및 양질의 임신중지와 사후관리,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으로 지연된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계획을 밝혀라.

25. 트랜스젠더 여성, 인터섹스를 비롯한 LBTI의 건강권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인정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녀가 없는 혼인하지 않은 성인 중 ‘트랜스섹슈얼리즘’ 진단을 받고 정신과/호르몬 치료를 받고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만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했다고 응답했으며, 93%는 일상생활에서 성 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확정 의료 조치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결국 성확정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71.0%가 비용 부담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CEDAW 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가 트랜스젠더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확정 관련 진료에 대한 보

³³ Korea Herald, “Abortion pill in review for over a year”, Oct. 10, 20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010000100>

협적용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통계적으로 국내 신생아는 연간 약 4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0.1%인 약 450명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양한 인터섹스가 인구의 최대 1.7% 정도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인터섹스 신생아의 수는 연간 7,650명에 달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법에 따라 자녀의 법적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선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후 이 성별을 변경하려면 법적 성별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이 사회화와 공교육 과정에서도 아동에게 성 이분법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부모는 동의 없이 자녀의 법적 성별을 결정하고, 자녀에게는 비가역적인 외과수술을 강요하게 된다

질문제안

- 성확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라.
- 강제적인 불임수술, 외부성기수술,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 없음, 연령 제한 등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부당한 요건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수행되는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금지함으로써 인터섹스 중 특히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신체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라.

결혼과 가족관계

26.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현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 및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일,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사조사관의 발언에 피해자가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지속해서 포착된다. 또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가정법원의 부부상담 명령은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이혼 과정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건수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 명령 건수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질문제안

- 한국정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비율과 부부 상담명령, 자녀면접교섭명령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혼소송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위협-가해자와의 대면, 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정보 노출 등-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을 밝혀라.

27. 사법부 구성원의 젠더 폭력 요소 이해

한국의 법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한다. 법

률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³⁴ 실제로는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이자 친권자인 가해자의 면접교섭 명령이 내려져 피해자의 불안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를 회유, 조종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과 연관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도 원칙 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제안

- 한국정부는 여성폭력 및 이와 관련한 자녀 양육권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부 구성원의 젠더 폭력 인지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보를 제공하라.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를 실질화 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라.

28.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

협약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개념을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는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일반논평 제21호 16번째 문단). 하지만 한국의 법률 체계가 인정하는 가족 제도는 결혼, 혈연, 혹은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유일하다. 등록동반자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내에서 인정하는 가정동반자관계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없다. 또한 한국의 법률혼은 현재까지 이성 간에만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의 배우자들은 국민건강보험, 유족 연금, 임차권 승계, 가정폭력방지법 상 보호,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할 등 법률혼의 일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한다. 2021년, 한 동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실혼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후 취소당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에서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으로 간주된다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30일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학회는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질문제안

-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등하게 건강보험, 사회보장, 주택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
-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자 제도 등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혜택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점진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

³⁴ Art. 837-2 (3), Civil Act

29.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은 혈연과 이성애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이들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하는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이 법의 개정에 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³⁵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법적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³⁶ 이는 동거 커플, 동성 커플,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들의 실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돌봄,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문제안

- 국가보고서에 비혼 동반자 관계 보호와 가족다양성의 증가를 반영하여 법제도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4차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하라.

³⁵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021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해 68.1%가 수용했고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해서도 70.3%가 동의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도 가족다양성의 증가를 반영하여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을 제4차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³⁶ Korea Joongang Daily, “Gender Ministry switches sides on 'healthy family' issue”, 2022.09.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9/22/national/socialAffairs/Korea-samesex-family/20220922184656179.html>